

붙임 1 2016년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

**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
주요 개정사항 및 운영방식 안내**

■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법적기준

○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[별표1]

- 실습기관 기준: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, 시설, 기관 및 단체
- 실습지도자 기준: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
- 실습시간 기준: 이수학점 3학점, 120시간 이상 실습 진행

■ 2016년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지침 주요개정사항

○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사항에 대한 세부 안내 추가 및 기준 완화

- 실습비에 대한 기준 강화(10만원 내외→10만원 이내) ※과다징수 사전 방지
- 실습지도자의 상근에 대한 사항, 실습지도교수와 실습지도자의 동일인 불가 명시
- 동일직장 내에서의 실습행위 전면 불인정

■ 사회복지현장실습 주요 운영방식

○ 실습비

- 적정 실습 비: 실습생 1인당 10만원 이내
- 실습생 식비는 별도 부과 가능하나, 실습비 이외의 '후원금', '실습 이외의 교육비' 등을 명목으로 추가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됨

○ 실습지도자

-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관의 상근직원이어야 함(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인 경우,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)
- 실습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는 동일할 수 없음
- 실습지도자 1인당 실습지도 인원은 1회기 기준 5인 이내로 하며,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음
- ※ 1회기 : 1학기, 여름방학, 2학기, 겨울방학

○ 실습지도교수